제167회 임시회 광 진 구 의 회

2013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3. 3. 25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

2013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

의안 번호 1030

> 2013. 3. 25.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03. 07. 광진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3, 03, 21,

다. 상 정 일 자 : 2013. 03. 22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광진구청장

나. 기 금 명: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·시설 건립기금

다. 관련 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제11조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0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
 -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고 수입계획은 성질별, 지출계획은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2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 -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
 -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(단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내인 경우 제외)

라. 변경사유

○ 2012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간주처리(4,500,000천원)

- 2012.12.20(24차) :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,500,000천원

- 2012.12.31(26차) :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,000,000천원,

구의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1,000,000천원

※ 2013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구의회 의결(2012.12.13)이후 서울시에서 자금배정

○ 2013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 변경안 제출

3. 2013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·시설 건립기금 변경안

1) 변경안 재원 : 4,500,000천원(서울시 특별교부금)

2)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계 | 전입금 | 예치금회수 | 이자수입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변경전 | 19,658,978 | 3,000,000 | 16,111,198 | 547,780 |
| 변경후 | 24,158,978 (+4,500,000) | 3,000,000 | 20,611,198 (+4,500,000) | 547,780 |

3) 지출계획(변경전 현황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1차) 포함)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계 | 일반 운 영비 | 연구개발비 | 시설비 | 예치금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경전 | 19,658,978 | 700,000 | 17,000 | 0 | 18,941,978 |
| 변경후 | 24,158,978 (+4,500,000) | 700,000 | 17,000 | 2,500,000 (+2,500,000) | 20,941,978 (+2,000,000) |

○ 변경안 지출항목 : 총 4,500,000천원

- 시설비 : 2,500,000천원

·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(자치행정과) : 1,500,000천원 신설

· 구의어린이공원 재조성(공원녹지과) : 1,000,000천원 신설

- 예치금 : 2,000,000천원

·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(가정복지과) : 2,000,000천원

※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1차) 현황

- 변경일: 2013, 1, 22,

- 변경사항 : 재무활동(집행잔액 및 이자수입) → 연구개발비로 정책변경

· 연구개발비 : 구청사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 연구용역 17,000천원

-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내인 경우로 구의회 의결에서 제외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2013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법적근거로는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,2항 규정에 의거 주요항목(정책 사업, 재무활동)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심의·의결을 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
-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항목으로 정책사업(사업예산) 내 시설비에 25억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전 정책사업 총지출액 7억1천7백만원보다 10분의 5을 초과 변경하는 것으로 구의회 심의·의결 대상

○ 2013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(구의회 2013 예산액 의결시)에 포함여부

-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로써 확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
- 변경안의 재원인 서울시 특별교부금 45억원이 "2013년도 예산안(기금포함)" 의결(2012.12.13)이 이루어지고 난 후 배정됨에 따라 구의회 예산 심의·의결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2년말 기금으로 간주처리하고 금번 "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"을 제출하게 됨

○ 변경재원 지출계획안에 대하여

- 2013년내 사업시행이 결정된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5억원과 구의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10억원은 정책사업내 시설비에 편성 변경하였으며
- 자양2동 복합시설 건립비 20억원은 대상사업지 선정과 건축비 적립 등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예치금에 편성

○ 검토결과

-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재원이 우리구 세수가 아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자금배정 시기가 2012년말로 일반예산에 편성 이월이 불가능하여 기금편성
- 또한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변경안이라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6. 토론

○ 반대토론 : 없음

○ 찬성토론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수정(별첨)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